



# 국제교육교류원규정

규정번호	KTC-H-02	1/4
제정일자	2011.04.06	
개정일자	2016.12.19	
관리부서	국제교육교류원	

## 강원관광대학교 부설 국제교육교류원 규정

#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강원관광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학칙 제85조(지원 시설)에 따라 외국어교육, 한국어교육, 해외연수 및 유학생 유치를 통하여 국제 화시대에 필요한 유학관련 업무 등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국제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 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6.12.19)

제 2 조 (기능) 교육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.

1. 국외기관과의 제반 교류(정책, 계획, 협약 등)에 관한 사항
2. 외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
3. 외국인 어학연수생 모집,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외국인 유학생 모집,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우리대학의 외국 홍보에 관한 사항
6. 어학 교육에 관한 연구 및 학술조사
7. 어학교육 교재 및 기타 출판물 간행
8. 어학 연구 및 언어교육과 관련된 학술행사 개최
9. 기타 국제 교류 업무에 필요한 사항

제 3 조 (설치) 교육원은 본교에 둔다.


### 제 2 장 조 직

제 4 조 (조직) ①교육원에는 원장, 교육실장 및 약간의 직원을 둔다.

②원장은 어학원을 대표하고 통할한다.

③교육실장은 교육원의 어학 및 유학관련 대외업무와 행정업무를 담당한다.

④필요시 원장을 보좌하는 연구 실장을 둘 수 있다.

	<h1>국제교육교류원규정</h1>	규정번호	KTC-H-02	2/4
		제정일자	2011.04.06	
		개정일자	2016.12.19	
		관리부서	국제교육교류원	

제 5 조 (임명) ①원장은 본교 조교수급 이상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 
 ②교육실장은 6급 이상인 자로 한다.

제 6 조 (임기)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 7 조 (교원 및 강사) ① 교육원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어학원 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  
 ② 교육원 시간강사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.

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
제 8 조 (구성) ①교육원에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이라 한다)를 둔다.  
 ②위원회는 원장 및 본교 교원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.  
 ③위원회의 회의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 9 조 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임기중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0 조 (심의·의결사항) 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,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교육원(어학생, 유학생)운영에 관한 사항
2. 수업 및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
3. 언어 교육방법의 개선을 위한 방안
4. 효율적 언어교육 교재 개발을 위한 방안
5. 언어 교육과 관련된 학술행사 개최
6. 기타 교육원 운영에 중요한 사항

제 11 조 (소집 및 의결) ①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연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여 회의를 관장한다.

	<h1>국제교육교류원규정</h1>	규정번호	KTC-H-02	3/4
		제정일자	2011.04.06	
		개정일자	2016.12.19	
		관리부서	국제교육교류원	

- 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위원회는 의결 사항을 집행하거나 기타 사항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## 제 4 장 학사 및 운영

- 제 12 조 (수업 및 교과과정) 수업 및 교과과정·학사운영은 따로 정한다.
- 제 13 조 (등록) 강좌 수강을 원하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수강료를 납부하여야한다.
- 제 14 조 (수강료 감면) 수강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 15 조 (등록취소 및 수강료 환불) 등록취소와 그에 따른 수강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 16 조 (수강연기) 수강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하거나 수강료 환불 규정을 적용한다.
- 제 17 조 (장학금) 장학혜택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 18 조 (교육분야) 한국어과정과 외국어과정은 각각 다음의 교육을 관장한다.
  - ① 한국어과정은 한국어와 한국 역사 및 한국문화를 교육한다.
  - ② 외국어과정은 실용 외국어와 해당 국가의 문화를 교육한다.

## 제 5 장 재 정

- 제 19 조 (경비와 예산) 교육원의 경비와 예산은 수강료 수입, 본교의 보조금, 교내외의 위탁교육비 등으로 편성한다.(개정 2016.12.19)



# 국제교육교류원규정

규정번호	KTC-H-02	4/4
제정일자	2011.04.06	
개정일자	2016.12.19	
관리부서	국제교육교류원	

제 20 조 (예산 및 결산) 원장은 매사업년도 개시 2개월전에 익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본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매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1 조 (회계집행)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원장이 관장하며, 확보된 운영자금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4월 6일 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.